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 「건축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했다.

(사례)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사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서 서식에 신청기한 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안내 한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7월 3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 ·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법제개선조정과	책임자	과 장	김종훈	(044-200-6847)
		담당자	사무관	이예경	(044-200-6848)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의료지원금 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조제3호 등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국방부
안 제3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제6항제2호 등	보상금의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행정안전부
안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접도의무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공지 중 광장, 공원, 유원지도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규정	국토교통부
안 제5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골재채취업 제재처분의 위반행위 차수가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별로 각각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	국토교통부
안 제6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보상금의 지급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국방부
안 제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함	금융위원회
안 제8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공람기간에서 제외함	국토교통부
안 제9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보상금 등의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행정안전부
안 제10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호 등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및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보상금 등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행정안전부

안 제11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별지서식	투자의향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의료비 지원 신청 대리 시 필요한 암환자의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1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함	금융위원회
안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 시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15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시 의견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안 제16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산업통상 자원부
안 제17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함	국방부